

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18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5. 9.

제 출 자 : 안 산 시장

1.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 (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가 개정공포('95. 7. 1.; 대통령령령 제14703호)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

2. 주요내용

-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용어중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변경 (안 제2조, 제4조)
- 보상금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시, 장애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(안 제4조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개정 내용 : 별조참조

안산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중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한다

제4조 제1항중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2조(정의)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"일비"라 함은 영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. 3. (생략) 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. (생략) <p>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①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같음) 2. "회의수당"이라 함은 영제15조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. 3. (현행과같음) 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회의수당의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2.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회의수당의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3. (현행과같음)</p> <p>②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</p>

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내용

	<p>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이며,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
<u>제15조의2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</u> ① 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 < 후단 신설 →	<p><u>제15조의2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</u> ① - . 이 경우 <u>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

-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
·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:
시 · 도의회의원 일비의 2년분
상당액
-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
경우 : 시 · 도의회의원 일비의
1년분 상당액
-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
: 치료비 전액 < 단서신설 >

② ~ ⑥ (생략)

제17조의4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
방법등) ①~③ (생략)
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
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
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
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
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
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
지방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
치단체의 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
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- 회의수당의 -
- 회의수당의 -
- 다만, 제2호의
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
할 수 없다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4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
의 방법등) ①~③(현행과 같음)
④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
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의
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
부과하되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
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
한다.